◎ 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07. 4. 10.
개정 2008. 2. 11.
개정 2012. 1. 17.
개정 2022. 8. 17.
개정 2024. 11. 20.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회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2. 11.〉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내규에 의하며, 이 내규에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 3 조(간사) 회장은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임명 할 수 있다.

제 4 조(의결권의 위임) 〈삭제 2022. 8. 17.〉

제 5 조(관계인의 의견진술)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(제안설명 등) 회장은 제안 안건에 대하여 사무처장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제 7 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17, 2024. 11. 20.〉

② 〈삭제 2022. 8. 17.〉

③ 〈삭제 2022. 8. 17.〉

제 8 조(회의록) ① 간사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(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부회장 또는 이사, 이하 본 항과 같다)과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3인 이상, 그리고 감사의 서명・날인을 받는다.

②회의록과 부의 안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운영기록) 간사는 이사회의 차수, 성원결과, 안건번호별 의결 결과 등을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의 이사회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비보상)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 1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. 1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8. 1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11. 20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제　차　이사회 회의록

1. 구　　분 : 〔정기·임시〕 이사회

2. 회의일시 :

3. 회의장소 :

4. 참석현황

제 적:　　명,　참 석:　　명,　위 임:　　명,　불 참:　　명

5. 부의안건

의안번호	안　건　명	심의결과
제　　호 제　　호 제　　호 제　　호 제　　호		

6. 진행내용

구　분	내　　용	비　고

년　　월　　일

〔별지 제2호 서식〕〈개정 2012. 1. 17, 삭제 2022. 8. 17.〉

〔별지 제3호 서식〕

이사회운영기록부

1. 구분 및 차수 : 제　차 〔정기·임시〕 이사회

2. 개최 일시 및 장소

○ 일　　시 :

○ 장　　소 :

3. 성원결과

○ 참석이사 :

○ 위 임 장 :

○ 불참이사 :

4. 부의사항

안건번호	안　건　명	의 결 결 과	비 고
제　　호			
제　　호			

〔별지 제4호 서식〕〈신설 2024. 11. 20.〉

이사회 서면결의서			
의안번호	제　　호 안건	의안명	
의결주문			
위 의안을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별첨 서명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재적이사 ○○인 중 ○○인의 동의로 (가결・부결)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　　월　　일			

※ 별첨 서명란

직 위	성 명	소속 및 직위	서　명